

## 학생징계규정

2022. 12. 01. 최초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0조에 따라 학생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총장은 학생 지도 및 처벌에 관한 주요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 학년도 학기 초에 구성한다.

④징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 손괴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 한 자
6. 학교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
7.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
9.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흥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10.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11. 학칙 등 제 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12.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조가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범한 자
13.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있는 자
1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4조(징계대상혐의의 조사 및 고지)** ①학생·취업처장은 학생이 제3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신고는 학생·취업처 학생팀(이하 “학생징계 담당부서”라 한다) 혹은 인권센터에 서면, 통신(전자우편을 포함),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본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학생징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피조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학생징계 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①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학생징계 담당부서는 징계혐의 학생 소속의 교원 및 기타 관계자 등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피해의 지속,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혐의 학생을 신고한 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또는 징계사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피해자 등은 징계혐의 조사 과정 중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징계의결요구)** ①학생·취업처장은 제4조에 의한 조사결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학생의 인적 정보자료
3. 그 밖의 혐의 내용 관련자료 등

②학생·취업처장은 제4조에 의한 조사결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취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사기관의 수사와의 관계)** 검찰,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 ①징계위원회는 학생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③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전자우편,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예정일 3일 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④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거나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 ⑤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⑥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요구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징계위원회 의결의 기한과 방법)**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부터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6조에 따라 징계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징계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기록 문서포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피해자, 학생,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 등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각 호 사항 등 그 출석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본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 신 :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업 등의 활동을 금지함
2.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3.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 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4. 제 적 : 학생의 지위를 상실하며, 학적에서 삭제함

②징계위원회는 별표1의 학생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학생의 평소 행동, 공적, 우수치는 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근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무기정학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적을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 징계혐의 학생에게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주의·경고하고 학생에게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상담·치료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해제)** ①근신 및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다.

②무기정학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품행 및 징계사유 등을 참작하여 소속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해제의견서를 구비하여 징계해제 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처분의 통지)** ①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하고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과 소속 학과에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에게 연락이 어려울 시에는 징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의 여부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징계 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14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후 취소·변경할 만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 징계 양정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학생 징계 양정 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위반 행위 정도 및 과실 여부  징계사유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3조(징계사유)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	근신	근신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제3조(징계사유) 제12호와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근신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	제적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학년		학번	
	연락처					
	주 소					
징 계 사 유						
징계 양정에 대한 의견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대전보건대학교 학생·취업처장 (인)</p> <p style="margin-left: 100px;">대전보건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 귀중</p>						

[별지 제2호 서식]

##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p>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p>					
<p>대전보건대학교 학생징계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p> <p>년 월 일</p> <p>대전보건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p> <p>귀 하</p> <p>(절 취</p> <p>선)</p> <p>진 술 권 포 기 서</p>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		
	학과		학년		학번	
	주소					
<p>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년 월 일</p> <p>성 명 (인)</p> <p>대전보건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 귀중</p>						

[별지 제3호 서식]

## 학생징계의결서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 년		학 번
	연락처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근 거)					
<p>년 월 일</p> <p>대전보건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p> <p style="margin-left: 200px;">위 원 장 (인)</p> <p style="margin-left: 150px;">위 원 (인)</p>					

[별지 제4호 서식]

## 학생징계처분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처분내용												
이유 (근거)												
<p>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대전보건대학교 총장 (직인)</p> <p>(                    ) 귀하</p>												
<p><u>유의사항</u></p> <p>대전보건대학교 학생징계규정 제15조에 따라 학생징계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